

교원윤리규정

제정 : 2011.07.30

개정 : 2011.11.22

개정 : 2021.12.01

제1장 대학교에 대한 윤리

제1조(교원의 사명) 대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이라 한다) 교원은 대학교의 설립 이념과 교훈,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과 연구와 봉사에 충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2., 2021. 12. 01.>

제2조(기본적 의무) ① 교원은 법인 정관 및 학칙 등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01.>

② 교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하며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명예와 자산보호의무) ① 교원은 개인의 기본권과 학문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는 한도에서 본 대학교의 명예와 이익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01.>

② 교원은 학교의 자산을 보호해야 하며,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직무상 취득한 정보누출금지) 교원은 직무상 습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출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직위남용금지) 교원은 직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발언과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되며 교원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2. 01.>

제6조(상호존중의무와 차별금지) ① 교원은 학교 내 다른 교원이나 직원 및 조교, 학생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원은 학교구성원의 성별·종교·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성희롱금지) 교원은 학교 내 다른 교원이나 직원 및 조교, 학생에 대해 성폭력 및 성희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겸직금지) ① 교원은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기관에 전속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총장의 허가를 얻어 타기관의 비상근직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교육과 연구의 의무가

우선되어야 한다.

제9조(협력의무) ① 교원은 입시업무 등 학사행정업무를 비롯한 학내의 사업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② 교원은 동료 교원 및 행정직원을 존중하며, 상호 협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보직업무 및 교내 제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제10조(졸업생에 대한 응대) 교원은 졸업생 및 학생의 보호자에 대해 성실히 응대하여야 한다.

제2장 교육자로서의 윤리

제11조 (강의내용 및 공정한 학사관리 의무) ① 교원은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

② 교원이 담당하는 교과목의 강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적합한 내용이어야 한다.

③ 교원은 성적평가에 있어 공정을 기하고, 자신의 강의평가 결과에 유리하도록 학생에게 개인적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학생지도) ① 교원은 학생이 기본교양과 전문능력, 기술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교원은 학사지도 등을 위해 학생면담을 성실하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자격증 및 취업지도) ① 교원은 학생의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교원은 학생을 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육자로서의 모범) 교원은 공사의 구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스승으로서 학생에게 귀감이 되는 품위 있는 행동을 취한다.

제15조 (학생의 인격존중) ① 교원은 교육 및 학생지도에 있어서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여 학생의 자유로운 학습을 지원한다.

② 교원은 권위적인 자세로 학생을 대하지 아니하며, 학생에 대해서 그 지위를 이용한 인권침해를 하지 않는다.

제16조 (능력개발의 의무) 교원은 자신의 교육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업의 내용 및

방법을 개선하는 것에 대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다.

제3장 연구자로서의 윤리

제17조 (연구자로서의 의무) ① 교원은 창의적인 연구에 지속적으로 정진하여야 한다.

② 교원은 타인의 지적재산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연구사업의 신고와 공개의무) ① 교원은 연구책임자 혹은 이와 유사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를 통해 관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원은 교육·연구 활동에서 학교의 자산을 이용하여 취득한 모든 특허나 발명 또는 발견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소유권의 귀속은 학교 및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한다.

제19조 (연구비 관리) 교원은 연구목적에 맞게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 (피연구자의 권리보호의무) 교원은 연구 사업을 수행할 때 피연구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21조 (연구업적 평가자로서의 의무) 교원은 타인의 연구업적을 평가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제22조 (연구업적 보고자로서의 의무) 교원은 자신의 연구업적을 보고할 때 제반 규정에 부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장 대외 활동에 관한 윤리

제23조 (사회적 평가를 위한 노력) ① 교원은 스스로의 사회적 평가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학교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제고를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원은 본 대학교 교원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수행할 때는 학교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동이나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2. 01.>

제24조 (개인적 교외활동) 교원은 사적으로 행동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할 때에 대학을 대표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5장 윤리 규정의 준수

제25조 (윤리규정 준수의 노력) 교원은 윤리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윤리 지도) 교원은 윤리규정에 반하여 교내·외적으로 물의를 야기하였을 경우 그 책임 및 문제를 인식하고 징계와는 별도로 지도 등을 통하여 윤리규정 준수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01.>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명변경) 본 교의 교명을 대원대학에서 대원대학교로 변경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